

정관

사단법인 함께웃는세상

사단법인 함께웃는세상 정관

2019.10.11. 제정

2021.01.18. 개정

2024.12.2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함께웃는세상”(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204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에 둔다.<개정 2024.12.22.>

제3조(목적)

본회는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다문화, 조손가정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고, 국제구호 사업의 참여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18. 2024.12.22.>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개정 2024.12.22.>

- 취약계층 노인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취약계층 노인 가정의 건강환경 지원 사업
- 취약계층 노인 가정에 물품지원 사업
- 조손가정 공부방 환경개선 및 생활지원 사업
-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
- 다문화 가정 주거환경 개선 및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
- 국제구호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의 이익)

본회의 목적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정치행위 금지)

본회는 2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본회의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제명)

-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21.01.18.>
 - 1. 이사장 1인
 - 2. 이사 3인~1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 3. 감사 1인
- ② <삭제 2024.12.22.>

제13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결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된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전자우편, 문자 등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6월과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1.01.18.>

제34조의2(출자 및 용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용자를 받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1.18.]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회계의 공개)

-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4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2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개정 2021.01.18.>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개정 2021.01.18.>

제8장 보 칙

제43조(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1.18.>

제43조의2(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개정 2021.01.18. 2024.12.22.>

제44조 (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21.01.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함께웃는세상

이사장 오기현

